

朝鮮總督府官報

第二千三百九十號

昭利九年十二月二十八日

金曜日

○勅令

昭利九年十二月二十八日

御名 御璽

昭利九年十二月二十八日

内閣總理大臣 岡田 啓介
 大藏大臣 高橋 是清
 農林大臣 山崎達之輔
 拓務大臣 伯備 兒玉 秀雄

百三十五號
 八年勅令第二百八十三號中左ノ通改正ス
 昭利九年十二月三十一日ニ改ム

公布ノ日ノリ之ヲ施行ス

○制令

昭利九年十二月二十八日
 朝鮮總督 宇垣一成

不正競争防止法
 昭利九年十二月二十八日

ルハ朝鮮總督トス

附則

本令施行ノ期日ハ朝鮮總督之ヲ定ム

〔参照〕

昭利九年法律第十四號

不正競争防止法

第一條 不正競争ノ目的ヲ以テ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行為ヲ爲シタル者ハ被害者ニ對シ損害賠償ノ責ニ任ズ

一 本法施行ノ地域内ニ於テ取引上原形認識セラルル他人ノ氏名、商標、商標、商標ノ容器包装其ノ他他人ノ商標タルコトヲ示シ表シ同ノ若ハ類似ノモノヲ使用シ又ハ之ヲ使用シタル商標タル者ハ損害賠償ノ責ニ任ズ

二 假設者ハ常用ノ商標ニ對シテ他人ノ商標ニ類似シ原產地ノ表示ヲ爲シ又ハ之ヲ表示シタル商標タル者ハ損害賠償ノ責ニ任ズ

三 他人ノ商標ノ信用ヲ害スル者ニ對シテハ裁判所ハ被害者ノ請求ニ因リ損害賠償ニ代ヘ又ハ損害賠償ト共ニ其ノ行為ノ禁止ヲ命ズルコトヲ得

四 必要ナル程度ニ行爲ヲ爲シタル者ニ對シテハ裁判所ハ被害者ノ請求ニ因リ商標ノ信用ヲ回復スルニ必要ナル措置ヲ命ズルコトヲ得

第二條 商標ノ普通名稱若ハ取引上普通ニ同種ノ商品ニ慣用セラルル地名其ノ他ノ表示ヲ使用スル行為又ハ之ヲ使用シタル商標ヲ販賣若ハ販賣スル行為ニ付テハ前條ノ規定ヲ適用セズ

第三條 外國人ニシテ本法施行ノ地域内ニ住所又ハ營業所ヲ有セザルモノハ條約又ハ之ニ準ズベキモノニ別段ノ規定アル場合ヲ除ク外第一條ノ請求ヲ爲スコトヲ得ズ

第四條 外國ノ國ノ商標、商標其ノ他ノ商標ニシテ主務大臣ノ指定スルモノト同一又ハ類似ノモノハ其ノ國ノ當該官廳ノ許可ヲ得テ之ヲ商標トシテ使用シ又ハ之ヲ商標トシテ使用シタル商標ヲ販賣若ハ販賣スルコトヲ得ズ

前項ノ商標ハ其ノ國ノ當該官廳ノ許可ヲ得テ之ヲ商標トシテ販賣若ハ販賣スルコトヲ得ズ

前項ノ商標ハ其ノ國ノ當該官廳ノ許可ヲ得テ之ヲ商標トシテ販賣若ハ販賣スルコトヲ得ズ

外國ノ官ノ監督用又ハ證明用ノ印章又ハ記號ニシテ主務大臣ノ指定スルモノト同一又ハ類似ノモノハ其ノ國ノ當該官廳ノ許可ヲ得テ之ヲ同一若ハ類似ノ商標トシテ使用シ又ハ之ヲ

用シタル商標トシテ販賣若ハ販賣スルコトヲ得ズ

帝國ノ商標、商標其ノ他ノ商標又ハ官ノ監督用若ハ證明用ノ印章若ハ記號ノ使用ノ許可ヲ當該官廳ヨリ受ケタルキハ外國ノ國ノ商標、商標其ノ他ノ商標又ハ官ノ監督用若ハ證明用ノ印章若ハ記號ト同一又ハ類似ノモノナル場合ト雖モ前項ノ規定ヲ適用セズ

第五條 前條ノ規定ニ違反シタル者ハ千圓以下ノ罰金ニ處ス

第六條 第一條第一號第三號及第四條第一項乃至第三項ノ規定ハ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又ハ商標法ニ依リ權利ノ行使ト認メラルル行為ニハ之ヲ適用セズ

附則
 本法施行ノ期日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法이나標識로州商品을販賣、無價
頭布또는輪出하는行爲

六、競爭關係에 있는 他人의 營業上의
信用을侵害하는 虛偽의 事實을 陳述
하거나 流布하는 行爲

第三條 (不正競爭行爲의 損害賠償責
任) ①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하여 前條各
號의 一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이
로 因하여 營業上 利益의 侵害를 받은 者에
對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② 前條第一號、第二號 또는 第五號에
該當하는 行爲로 因하여 他人의 營業上
의 信用을 侵害한 者 또는 同條第六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는 法院
은 被害者의 請求에 依하여 損害賠償에
代身하여 또는 損害賠償과 함께 營業上
의 信用을 恢復하는 데 必要한 措置를 命
할 수 있다

第四條 (適用하지 아니하는 行爲)

① 第二條、第三條와 第八條의 規定은
다음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行爲에 是適
用하지 아니한다

一、商品의 普通名稱 또는 去來上 通常
同種의 商品에 慣用된 標識를 普通
使用되는 方法으로 使用하는 行爲 또는
이를 使用한 商品을 販賣、無價頭
布 또는 輪出하는 行爲

二、去來上 通常 同種의 營業에 慣用된
는 名稱 其他의 標識를 普通 使用되는
方法으로 使用하는 行爲

三、自己의 姓名을 善意로 使用하는 行
爲 또는 이를 使用한 商品을 販賣、無
價頭布 또는 輪出하는 行爲

② 前項第三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는 이 로 因하여 營業上 利
益이 侵害될 憂慮가 있는 者는 商品 또는
營業上의 施設 또는 活動의 混同을 防止
함에 適當한 標識를 用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單純히 商品의 販賣、無價頭
布 또는 輪出을 하는 者에 對하여는 例外
로 한다

第五條 (外國人에 對한 例外)

外國人
으로서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두지
아니한 者는 條約 또는 이에 準하는 것
에 別段의 規定이 있는 範圍를 除外하고는
第二條、第三條와 前條第二項의 規定
에 依한 請求를 할 수 없다

第六條 (國旗、國章等의 使用禁止)

① 國旗、國章、軍旗、勳章、褒章、
記章 또는 國際機構等의 標識는 이 商
標로 使用하거나 또는 이 商標로 한 商
品을 販賣、無價頭布 또는 輪出할 수 없
다

② 外國의 紋章、旗章 其他의 徽章으로
서 商工部長官이 指定하는 것과 同一
는 類似한 것은 그 國家의 當該官廳의 許
可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商標로 使用하
거나 또는 이를 商標로 使用한 商品을 販
賣 또는 無價頭布 할 수 없다
③ 前項의 紋章、旗章 其他의 徽章은 그

國家의 當該官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
면 商品의 原產地의 誤認을 일으키게 하
는 方法에 依하여 去來上 이를 使用하거
나 또는 이를 使用한 商品을 販賣 또는 無
價頭布 할 수 없다

④ 外國政府機關의 監督用 또는 證明用
의 印章 또는 記號로서 商工部長官이 指
定하는 것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은 그 國
家의 當該官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면
이 用이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 使
用하거나 또는 이것을 使用한 商品을 販
賣 또는 無價頭布 할 수 없다

第七條 (無體財產權行使行爲에 對한
適用의 除外)

第二條第一號 및 第二
號、第三條、前條第一項 및 第二項과
第八條第二號의 規定은 特許法、實用
新案法、意匠法、商標法 또는 商法中
商號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權利를 行使
하는 行爲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
다

第八條 (罰則)

다음各號의 一에 該當
하는 者는 二年 以下의 懲役 또는 五十萬
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一、商品 또는 그 廣告에 그 商品의 原產
地、品質、內容 또는 數量에 關하여
誤認을 일으키게 하는 虛偽의 標識를
한 者

二、不正競爭의 目的으로 第二條第一
號乃至 第五號의 一에 該當한 行爲를
한 者

第九條 (罰則) 第六條의 規定에 違反
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百萬圓 以
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十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其
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
에 關하여 前條의 違反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는 前條의 規定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對하여도 同條의 規定에 依한 罰
金刑에 處한다

附 則

① 本法은 檀紀 四千二百九十五年一月一
日부터 施行한다

② 檀紀 四千二百六十七年十二月 朝鮮不
正競爭防止令은 이를 廢止한다

國家再建最高會議의 議決로 確定된 兒童
福利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尹 潽善 團

內閣首領 宋 堯 讚

保健社會部 鄭 熙 燮

◎ 法律 第九一二條

兒童福利法

第一條 (目的) 本法은 兒童이 그 保護
者로부터 遺失、遺棄 또는 離脫되었을

二〇二〇一四八

